

[긴급포럼 자료집]

그 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
입니다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2017. 1. 16 (월) PM 2시-4시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

공동주최

씨네러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 진행순서 ■

사회 : 윤태진 |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 인사말

주성철 | 씨네리 편집장

■ 토론

1부 토론자

정하경주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 4P

조인섭 |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 12P

손희정 |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연구원 ----- 17P

이예지 | 씨네리 기자 ----- 21P

2부 토론자 (25p 녹취록 참조)

김꽃비 | 영화배우, '찍는 페미' 개설자

이연희 | 영화감독 <미씽: 사라진 여자>

안병호 | 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

■ 질의응답 및 참석자 발언 (30p 녹취록 참조)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1)

-남배우A 성폭력 사건 개요 및 시사점-

정하경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1. 남배우A 성폭력 사건 개요2)

1) 피해 사실

이 사건의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배우A(이하 피고인)는 영화 촬영 과정에서 감독, 피고인, 배우B(이하 피해자)가 사전 협의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피해자를 폭행하고, 속옷을 찢고,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는 행위를 했다.

피해자는 영화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15세 관람가의 휴먼드라마로 노출 씬은 없을 것이라고 들었고3), 해당 씬에 대해 감독은 피해자에게 ‘몸의 명자국을 보여줌으로써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해당 영화 촬영 수위에 있어서 관계자들의 인지가 달랐다. 영화 촬영 수위에 대해서 감독이 정확하게 공유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해당 영화 촬영 관계자들의 촬영 수위에 대한 인지>

투자자	총괄PD, 감독	피해자	피고인	스태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 이상 관람가’ 수준으로 촬영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연 배우 캐스팅 문제 등을 고려하여 ‘15세 관람가’로 촬영 수위 결정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드신 없는 15세 관람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 듣지 못했음 • 감독의 구체적 인 지시(미친놈처럼 피해자 강간)대로 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는 ‘19세 이상 관람가’로 인지 • 일부는 ‘15세 관람가로 인지’

- 1) 이 글은 김민문정, 김현지, 이소희, 정예원, 정하경주, 신혜정이 논의한 내용을 정하경주가 정리했다.
- 2) 영화 제목, 피해 날짜를 명시할 경우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특정,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3) 피해자는 이전에 15세 관람가 영화에 등이 노출되는 베드신 장면을 촬영(섭외 당시 노출이 있다는 것이 고지되었고 계약서에도 기재)한 적이 있다. 당시 등만 노출되었으나 노출 연기 촬영이 너무 힘들어 그 영화를 계기로 노출 영화는 출연하지 않겠다는 연기관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영화 섭외 당시 ‘노출은 하지 않는다’고 알렸고, 이에 PD는 노출이 없으며 15세 휴먼드라마라고 고지했다.
- 4) 이 사건의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상영등급은 영화 제작이 모두 완성 된 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해당 씬 촬영 직전 감독은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의 뒷부분 어깨 쪽을 당겨 멍을 보여주는 연기를 하는 것으로 콘티를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씬 콘티 변경 내용>

콘티	최종 콘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정 없이 저항하는 ㄱ을 그대로 제압하고 거실 벽으로 밀어 ㄱ의 바지를 내리는데 줌처럼 벗겨지지 않는다. 잔뜩 독기가 서린 ㄴ이 ㄱ의 바지를 찢어 내린다. • ㄱ의 몸 구석구석에 오래된 멍들이 독버섯처럼 배어 있다. • ㄱ을 돌려 벽에 붙이고 뒤에서 하이에나 같은 신음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지를 찢어 내리는 것을 상의로 변경 • 몸 구석구석에 오래된 멍을 어깨 쪽 멍으로 변경 • ㄱ을 돌려 벽에 붙이고 뒤에서 하이에나 같은 신음을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촬영에 들어갔을 때 콘티와도 다르고, 사전 합의도 되지 않은 신체 접촉을 다음과 같이 했다.

<해당 씬에 대한 사전 합의 내용과 실제 촬영 내용>

촬영 전 합의 내용 ⁵⁾	실제 촬영 내용 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스트 샷과 클로우즈업 샷으로 촬영 • 피해자의 상의 뒷부분 어깨 쪽 멍 보이도록 옷을 잡아당김 • 피해자가 벽 쪽에 있고 피해자 뒤에서 피고인이 신음소리나 표정 연기 통해 간접적으로 강간상황 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스트 샷과 클로우즈업 샷으로 촬영 • 피고인이 입을 맞추려고 해 피해자가 피해자,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 피해자의 상의 양쪽을 잡아서 찢고, 상의 속옷을 찢고 • 피해자의 가슴 접촉 •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아래로 잡아당겨서 바지 내리고 •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음 • 피해자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닿게 함 • (판결문에 따르면) '사정 연기'⁷⁾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영화제작자 입장에서는 일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기준에 따라) 상영등급을 정하여 그에 맞는 촬영을 진행하고, 촬영 도중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초 예상 상영등급을 변경하여 촬영을 진행하기도 한다.

5) 촬영 직전 감독, 피해자, 피고인이 해당 씬에 대한 대화가 메이킹 필름으로 촬영되었고, 그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2) 사건 경과

사건 당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는 해당 씬 촬영이 끝나고 피고인에게 상의 속옷을 찢은 것에 대해서 항의 하고 스태프와 감독에게 추행 사실에 대해서 알려 피해사실 공론화
사건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고인의 사과, 영화 하차 등의 합의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하차를 반복하는 등의 행위로 2차적 피해 발생 피해자 지원기관 상담 후 경찰에 강제추행치상에 대한 신고 접수 피고인의 역고소로 고소장 접수 검찰은 강제추행치상으로 피고인 기소, 징역 5년 구형
2016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심 법원의 무죄 판결 검찰 항소
2017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심 재판 일정 확정

2. 재판부에 묻다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 배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모를 만지는 등의 추행 사실이 없으며,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고인이 피해자의 당초 예상을 넘어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 및 강간연기를 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 속옷까지 찢어지게 되었음에도 감독과 피고인이 충분한 해명 또는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사태를 무마하려고만 하자 <u>억울한 마음에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u> 보이며,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고, 며칠 후 메인 스태프와 피해자가 모인 자리에서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피해자를 두둔하며 피고인을 힐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피해자의 촬영거부로 예정된 촬영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빚어지는 막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u>피해자의 기분을 맞추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u>
--

6) 당시 바스트샷으로 촬영 중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것은 촬영되지 않았다.

7) 음향팀 진술에 따르면 촬영 도중 녹음된 피고인의 신음소리를 듣고 자위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함. 녹음기사 역시 “남자배우가 연기 아닌 다른 목적의 행위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듣고 있던 헤드폰도 벗어놓았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에 부합하는 녹취, 증언 등의 증거기록을 배제했다. 문제는 배제의 이유이다.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증언에 대해 성추행 피해 때문이 아니라, 개인 속옷이 찢어진 것에 대해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아서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을 성추행이라고 다소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며,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 다음날 감독과 메인 스태프가 모인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피고인의 행동이 연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는 녹취자료가 제출되었다.

<증거 녹취록 주요 내용>

감독: 피고인이 헛 짓거리 한 거 맞고, 리허설 2,3번 하면서 바스트 사이즈로 하기로 했으니깐 시늉만 하라고했는데 지 말로는 필 받아서 그랬는데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한 거고.
 스태프1: 보통 연기하는 수준이 아니었고, 이게 조금 과했다. 피해자도 처음에는 연기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빨리 컷 싸인 나오기만을 기다리는(...)나는 어느 순간부터 헤드폰도 내려놓고 있었다고
 스태프2: 상반신에 대한 노출(...)배우가 연기하다 보면 당연히 민감한 거 아니야. (...)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밑에까지도 장난을 친 거지. 이 얘기를 알면 누가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냐고.
 피해자: (...) 그쪽 회사 문제 얘기하는데 저도 계속 영화 피해 안 가려고 하는 건데, 여태까지 참은 건데 만약 그쪽에서 계속 피해를 주면 저도 가만히 안 있겠다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독: 성추행으로 고소해버려(...)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자료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영화 촬영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봐 피해자의 기분을 맞추어 주기 위해 피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위 녹취록을 인용하면서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몰래 녹음해 두었는데, 참석자들의 진술 내용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고 기술한다. 녹취록에 대해 ‘몰래 녹음’했다고 기술한 것은 위 녹취록에 대해 재판부의 편견⁸⁾이 작동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사건 현장을 목격한 감독과 스태프들이 사건 직후 사건에 대해서 진술한 것은 피고인과의 관계, 친분 등으로 인해 진술 오염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법원의 증거 배제는 비합리적이다.

배역에 몰입한 연기는 치외법권 입니까?

이 사건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콘티 및 사전 합의와 전혀 다른 ‘연기’를 한 것에 대

8) 재판부가 ‘몰래 녹음’이라고 적시한 것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유도하기 위해 스태프들과 대화할 때 미리 녹음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녹음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했을 때, 감독이나 스태프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꺾끄러워 지는 등의 곤란한 상황을 우려해 진술을 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녹음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해 피고인은 현장에서 시나리오가 변경되고, 해당 씬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없어서 감독의 지시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연기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배우로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강간하는 연기’를 한 것은 업무상 행위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이 가벌성이 있는 ‘예술을 빙자한 추행’인지, 가벌성 없는 ‘배역에 몰입한 연기’인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고, 피고인이 감독이 지시한 대로 ‘배역에 몰입해 연기’했고 이는 업무상 행위이므로 성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했다.

법원이 말하는 배역에 몰입한 연기란 도대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배역에 몰입한 연기’는 일반적으로 메소드 연기로 통칭되는데, 메소드 연기는 리허설을 통해 극중 인물과 동일시되어 가는 극사실주의적 연기 스타일을 지칭하는 것이다. 해당 씬 촬영 현장에서는 리허설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을 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해당 씬에 대해서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역에 몰입한 연기’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 혼자만의 주장일 수밖에 없다.

감독의 지시대로 ‘강간 연기’를 했기 때문에 업무상 정당행위라는 법원의 판단도 동의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폭행 씬을 촬영할 때는 치밀한 동선들을 설계해 합을 맞춰서 촬영을 한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강간 연기’에 대한 사전 합의 후 동선을 짜고 리허설을 진행했다면 업무상 행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영화의 해당 씬 촬영에 있어서 피해자는 ‘강간 연기’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합의 과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해당 씬에 대해서 감독의 지시에 전적으로 의지해 ‘연기’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감독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한 채 해당 씬에 대해 합의했음을 뜻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감독은 해당 씬에 대해 피고인에게 따로 연기 지시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감독이 지시한 연기에 대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촬영 전 당연히 진행되었어야 할 감독-피해자-피고인 간의 합의를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⁹⁾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백번 양보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피고인이 강간 가해자 ‘연기’를 하면서 배역에 몰입해 ‘사정 연기’까지 했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피해자는 몸의 멍 자국을 보여줌으로써 평소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씬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간 가해자 연기의 상대 배역인 강간 피해자 연기는 불가능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강간 피해 상황이 실제 발생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연출 책임자인 감독이 연기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합의

9)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촬영 전 감독과 피고인이 둘이 쭈뼛대기에, 피해자는 감독과 피고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나?’고 물었는데, 감독과 피고인은 ‘몰라도 된다’고 했다. 이에 다시 피해자가 ‘무슨 이야기했냐?’고 묻자 감독은 ‘빨리 촬영하자’해서 피해자는 다른 일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다.”

과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했다.¹⁰⁾ 하지만 사건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를 영화계의 특수성으로 인정¹¹⁾했다. 저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니 빨리 촬영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라 영화 촬영 과정에 대해 충분히 합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영화계의 특수성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영화계의 특수성이 아니라, 저예산으로 영화를 제작해 더 많은 수익을 내려는 투자사나 제작사의 잘못된 관행일 뿐이다. 결국 1심 법원의 판단은 영화계의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면서 용납했다. 영화촬영 과정에서 배우, 스태프에 대한 인권침해, 저임금 등의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되지 않아야 한다. 합의되지 않은 ‘연기’는 ‘배역에 몰입한 연기’가 아니라 ‘연기를 빙자한 폭력’임을 2심 재판부는 명확히 해야 한다.

3. 우리에게 묻다

영화 제작이라는 예술 작업에서 일터의 윤리는 작동 되고 있는가?

이 사건은 저예산 영화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배우나 스태프들의 인권을 사각지대에 놓고 흥행이라는 이름 속에서 여성 배우가 ‘배우가 아니라 상품’으로 소비되어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성폭력이 있어도 묵인하는 관행들이 영화계의 특수성이란 미명하에 받아들여지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영화계의 특수성을 주목하기 이전에 어느 작업장에서나 지켜져야 할 인권의 보편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감독-배우-스태프는 영화의 장면들을 만들고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협업 관계에 있다. 협업의 전제는 소통과 합의이다. 합의되지 않은 연기를 상대배우에게 일방적으로 표출한 행위를 예술의 영역으로 용인하는 방식은 성폭력 가해자가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 시키는 궤변과 다를 바 없다.

이 사건의 감독(현장총괄책임자)은 여성 배우(피해자)에게 업무내용을 고의로 다르게 고지하고 업무 계약을 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감독(현장총괄책임자)이 영화촬영 현장이라는 일터에서 감독이 원하는 업무를 여성 배우(피해자)가 판단이나 선택의 여지없이 수행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터의 동료인 남성 배우(피고인)와 스태프 또한 감독(현장총괄책임자)이 여성배우(피해자)에게 고의로 업무를 다르게 고지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여성 배우(피해자)를 대상으로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짚어봐야 한다.

이 사건의 공론화를 계기로 영화촬영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일터의 윤리에 대해서 성

10) 판결문에 “감독이 피고인에게 난폭하게 강간할 것을 지시하면서 가슴을 움켜쥐는 시연을 하기 전에 피해자가 알아챌 것을 염려하는 듯 주위를 둘러보기도 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11) ‘저예산영화가 갖는 시간상, 공간상 한계, 제작진의 준비 소홀 등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씬 촬영 당시 구체적인 부분들(중략)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연기했다.(중략) 감독의 시연에 따라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시늉을 하는 연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찰과 구체적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 영화촬영 과정에서 감독, 배우, 스태프 등의 업무가 무엇인지 정확한 소통과 합의, 배우-스태프의 안전이나 인권 침해 여부 검토를 통해 사고 예방,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등이 영화촬영 현장의 특수성에 맞게 구조화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영화촬영 과정에서 소통이 충분했는지, 정확히 합의가 되었는지, 안전과 인권의 침해는 없었는지 끊임없이 체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영화 제작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투자사, 제작사, 감독에게 더 크게 있다.

성폭력을 소비하는 영화산업, 이게 최선입니까?

감독이 배우 및 스태프에게 영화 촬영 수위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영화 촬영 과정에서 은근슬쩍 ‘19세 이상 관람가’로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감독은 법정 진술에서도 ‘사실 여배우의 가슴이 노출되는 상황도 기대하긴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투자자, 제작자, 감독의 이해관계 속에서 강간 장면을 영화의 흥미를 끌기 위한 자극적인 소재로 소비하며, 흥행을 위해서는 여성배우에 대한 성추행도 용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관행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도 ‘영화의 흥행을 위해서는 여성배우에게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노출 연기를 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영화계의 관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영화 속에서 여성배우에 대해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가 아닌 흥행을 위해 노출하는 존재로 취급하는 사회의 왜곡된 통념을 반영한 것이며, 이런 왜곡된 통념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제2,3의 사건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공생의 조건, 발 딛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기

‘#000_내_성폭력’ 선언 이후 민우회에도 관련 상담들이 접수되었다. 피해자들이 주로 상담 받고자 하는 내용은 업계 내에 피해사실을 공개한 이후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혹은 ‘무고’ 등 역고소 문제, ‘000_내’라는 업계 내에서의 평판에 대한 걱정 등이었다. 그간 ‘000_내’라는 업계 내에서 갑자기 사라진 여성(피해자)동료들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업계 내에서 성폭력 문제는 해결은커녕, 직업, 꿈, 생계의 위협이라는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형사사법절차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상황에 손을 놓고 있는 한국 사회의 부정의한 민낯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또한 영화 촬영 중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여’배우로 영화계에서 찍히지 않을까를 우려해야 했다. 형사고소 이후 현재까지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배우라는 직업을 그만두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여’배우라는 직업 때문에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것이 두려워 형사고소 과정을 쉬쉬하며 진행해 왔다. 피해자이지만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피고인이 가해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무고 및 명예 훼손 역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¹²⁾, 영화계 내의 인맥들을 통해 피해자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피고인과 영화계 관계자들의 위협 속에서 피해자는 말하기를 중단하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사건을 공유하는 선택을 했다. 피해자는 영화계 내의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 하는 용기를 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전에 나와 비슷한 일을 겪은 동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힘들겠다는 정도의 생각만 했던 것 같다. 얼마 후 동료는 배우 일을 그만 두고 영화계를 떠났다. 이번에 그 동료와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이번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다른 동료, 후배들도 비슷한 피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 촬영 과정에서 성폭력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피해자의 증언은 영화계 시스템 안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성폭력이 용인되고 있는 않은지, 영화계 내의 여성 인권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지, 영화제작 과정에서 예산, 시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한 일들이 합리화 되는 잘못된 관행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제는 영화계와 사회가 답할 차례이다.

12) 검찰은 피고인이 제기한 무고 및 명예훼손 역고소에 대해서 무혐의 불기소 했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은 항소 진행했으나 최종 무혐의 불기소 결정됨. 검찰은 피고인에 피해자를 무고했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해 무고, 강제추행치상 기소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무고와 강제추행치상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영화촬영 현장에서의 성폭행은 왜 정당화되는가

조 인 섭(법무법인 신세계로 대표변호사)

1. 1972년에 개봉한 <파리에서의 마지막 탕고>라는 영화를 찍은 여배우가 강간당하는 장면이 '실제'였으며, 그것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는 사실은 40여년이 지난 2013년에야 세상에 드러났다. 그 오랜 기간 동안 해당 여배우가 느꼈을 고통은 이루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영화촬영 현장에서 성추행이 문제된 사건이 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1심 판결문은 '피고인이 시나리오와 콘티 및 감독의 지시에 따라 강간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신체적 접촉을 넘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모를 만졌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고 하면서, ① 가슴을 스치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불가피한 신체접촉만 있었을 뿐 ②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일은 없었으며 ③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고 ④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부당하다.

2. 우선 이 사건 썬이 '정당한 연기'였는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초 이 사건 썬은 어떻게 예정되어 있었는지와 실제 촬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 당초 투자자는 상영등급 '19세 이상 관람가' 수준으로 촬영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 총괄 피디와 감독은 배우들을 캐스팅할 때 난항을 겪을까봐 '15세 이상 관람가'라고 이야기하며 캐스팅을 하였으나 상영등급은 변경 가능한 상황을 열어두고 있었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영화는 '베드씬 없는 15세 관람가'에 해당한다고 알고 캐스팅되었으며, 감독은 이 사건 썬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는,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처절함을 표현하는 썬이라고 하였다.
- 감독은 분장팀에게 피해자의 뒷목과 어깨 사이 부위, 윗등 부위 등 브래지어 끈 위쪽의 서너 군데 부위에만 멍 분장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 당시 콘티와 시나리오에는 '표정 없이 저항하는 A를 그대로 제압하고는 거실 벽으로 밀어 A의 바지를 내리는데 좀처럼 벗겨지지 않는다. 잔뜩 독기가 서린 B가 A의 바지를 찢어 내린다. A의 몸 구석구석에 오래된 멍들이 독버섯처럼 배어

있다. A를 벽에 붙이고는 뒤에서 하이에나 같은 신음을 한다'고 되어 있다. 즉, 당초 이 사건 영화는 '15세 이상 등급'으로 촬영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것을 전제로 피해자를 캐스팅한 것이며, '분장지시', '콘티', '시나리오' 그 어디에도 '실제로 발생한 추행'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여지를 두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실제 촬영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상황은 은근슬쩍 '19세 이상 관람가' 영화로 바뀌어 버렸다.

- 이 사건 썸과 관련하여 감독은 가급적 수위 높은 여배우의 노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해 난폭한 강간연기를 지시하였고, 당시 감독은 여배우의 가슴이 노출되는 상황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 솔직한 욕심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 당시 메이킹 필름 영상 녹취록에 의하면, 감독은 '주위를 둘러보다가¹³⁾ 피고인 뒤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움켜 잡는 듯한 시늉을 하면서 "마음대로 하시라고요"라고까지 지시하였다.
- 그런데 당시 감독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는 다른 내용으로 연기지시를 하였는바 즉, 감독은 피고인에게는 강간을 강조하였고 피해자에게는 폭행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지시한 강간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감독은 남자배우에게는 강간연기를 마음껏 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여배우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무리하게 촬영을 강행한 것이다.

실제 촬영된 장면은 'B(남자 배우)가 A(여자 배우)에게 다가가면서 오른손으로 벽을 짚음. 비명을 지르는 A를 돌려 세움. A를 벽 쪽으로 밀침. A가 발버둥침, A가 벽을 마주 본 상태에서 B가 A의 등 쪽에서 거칠게 A의 상의를 찢음. 상의가 찢어지면서 브래지어를 착용한 A의 어깨와 등이 드러남. A의 등을 때림. A가 벽을 마주한 채 가만히 있자 B가 거칠게 A의 브래지어를 찢음. B가 A를 뒤에서 감싸 안음. B가 A와 밀착한 상태로 A의 브래지어 끈을 좀 더 내림. B가 오른 손으로 A의 목을 감고 왼손으로 자신과 A의 바지를 내리는 시늉을 함. B가 후배위로 성행위 연기를 함. A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음. B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후배위로 성관계하는 시늉을 함. A는 벗어나려고 함. B가 A를 다시 벽 쪽으로 돌려 세우고 계속 신음소리를 내며 후배위 성관계를 함. B가 자신의 안경을 벗어 던지고 계속 거칠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성관계를 함. A는 저항하지 않음. B가 숨을 고르기 시작함(사정하는 연기)..'

앞서 살펴본 콘티나 대본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촬영이 된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13) 피해자가 주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3. 불가피한 신체접촉만 있었는지 여부

한편,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씬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를 거칠게 강간하는 연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찢고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등을 만지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스치고 바지를 벗기는 연기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지고 손으로 하체 일부를 스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1심은 불가피한 신체접촉만 있었던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가슴을 스치거나 엉덩이나 허리를 만진 것이 아니라 추행이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판결문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감독의 지시, 행동)과 실제 촬영된 장면들에 의하여 넉넉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이 사건 씬은 단순히 가슴을 스친 행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난폭한 분위기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이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실제 촬영된 장면은 '감독의 지시'도 벗어나는 수준이었다. 감독은 난폭하게 행동하라고 했어도 피해자의 가슴을 노출하라고 한 바 없고, 게다가 피고인이 사정을 하는 연기까지 하라고 한 사실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노출시키고 사정연기까지 한 것이다(심지어 촬영당시 스텝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사정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기까지 한다고 한다).

4.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

그런데 이러한 행동과 관련하여 1심은 '연기'로 인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시나리오'나 '콘티'와는 다른 연기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 심지어 그것이 '감독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피해자를 추행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다. '과실'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은 부당하다.

5. 업무로 인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편, 해당 판결은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형법은 제20조에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업무로 인한 행위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업무의 내용이 사회 윤리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라고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본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 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가벌성 있는 예술을 빙자한 추행인지 가벌성 없는 배역에 몰입한 연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상대 여배우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영화 전체의 스토리, 감독이 해당 씬을 구상한 의도, 배우들이 연기의 기준으로 삼는 해당 씬의 시나리오, 콘티, 감독의 지시 등의 내용, 구체적인 연기내용과 노출수위 등이 사전에 감독과 배우들, 스텝들 사이에 충분히 공유되었는지 여부, 촬영 스텝들이 실제로 느낀 당시의 분위기, 배우들의 경력 등의 제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이 사건 영화 전체의 스토리는 '에로'하고는 거리가 먼 영화였으며¹⁴⁾
- 감독이 해당 씬을 구상한 의도는 피해자에게는 '가정폭력'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하였고, 실제로 폭력을 강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에 '멍'분장을 하였고,
- 해당 씬의 시나리오, 콘티, 분장 지시 등 어디에도 '피해자의 가슴노출'이나 추행에 대하여 예상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 또한 당시 촬영에 동석했던 참석자들은 '피고인이 헛짓거리 한 거 맞고', '보통 연기하는 수준이 아니었고 이게 조금 과했다. 피해자도 처음에는 연기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빨리 컷 싸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를 안하더라고...나는 어느 순간부터 헤드폰도 내려놓고 있었다고', '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밑에까지도 장난을 친거지', '그 새끼 자위한 거 같아요. 폭 주저앉았는데 몇 분 동안 못 일어나더라고요'라고 하며 당시의 분위기가 정상적인 영화촬영 현장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 감독이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다른 연기지시를 하였고,
- 감독이 피해자의 노출을 의도하였고, 19금 영화를 찍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 그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사 '감독의 의도'대로 피고인이 연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정당화되지 않

14) 판결문 제10쪽 감독의 진술 인용

는다. 왜냐하면 이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못한 것이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감독의 지시도 벗어난 것이었기 때문이다.

6. 그렇다면, 이 사건 썬의 경우 감독의 의도대로 피고인이 행동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기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과 감독이 공범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고, 감독의 의도에서 벗어나 피고인이 단독으로 행동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촬영'을 빙자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까지 영화촬영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영화촬영'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을지 예상이 되고도 남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한국영화계 70년 역사상 추행이라고 이야기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처럼, 아무도 지금까지 이야기를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라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연기라는 미명하에, 영화촬영이라는 미명하에 여배우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다.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손희정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1. 왜 반복 되는가: 대상화의 문제

영화계 내 성폭력은 재현과 (프리-프로덕션-포스트를 아우르는 과정으로서의) 제작 현장이라는 양쪽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재현은 현실을 반영하고 현실은 재현으로부터 자양분을 얻는다는 의미에서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재현 상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여성을 대상화하는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종종 현실에서의 성폭력으로 이어진다.

여성을 대상화한다는 것은 “한낱 물건이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여성혐오 문화는 이러한 대상화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마사 누스바움에 따르면 이 대상화는 다음 열 가지 대상화의 방식이 엮여있는 집합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 (1) 도구성: 대상을 목적을 위한 도구로 취급한다.
- (2) 자율성 거부: 대상을 자율성과 자결능력을 갖지 못한 것처럼 취급한다.
- (3) 비활성: 대상을 능력agency이나 활력을 갖지 못한 것처럼 취급한다.
- (4) 대체 가능성: 대상을 (a)같은 유형의 다른 대상으로 (b)다른 유형의 대상으로 교체가 가능한 것처럼 취급한다.
- (5) 가침성: 대상의 경계를 언제라도 침입하여 부서뜨리거나, 박살낼 수 있는 것처럼 취급한다.
- (6) 소유권: 대상을 소유해서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 (7) 주체성 거부: 대상의 경험과 느낌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
- (8) 신체로의 축소: 대상을 신체나, 신체의 일부로만 취급하는 것.
- (9) 외모로의 축소: 대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감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취급.
- (10) 침묵시키기: 대상을 말할 능력이 없는 침묵하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¹⁵⁾

이를 경유해서 보면 여성은 재현 안에서도 재현 밖에서도 대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탕고>나 최근의 ‘과몰입’ 판결 작품(이하 작품A)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남성 감독과 남성 연기자 (그리고 빈번하게 남성 스태프들) 사이에 존재하는 남성 카르텔이 어떻게 여성 배우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로 대상화하여 작품

15) 마사 누스바움, 대상화와 인터넷상에서의 여성 혐오, 불편한 인터넷, 2012, 에이콘, 119-121쪽. 1-7번은 누스바움이 정리하고 있는 것이고, 8-10번은 그가 철학자 레이 랭턴의 논의에서 가져와 덧붙이고 있는 항목들이다.

을 둘러싼 의사결정과 논의 과정에서 소외시키고 완전히 도구화하여 그의 인간이자 노동자로서의 존엄을 침해하는가다.

남성 카르텔은 여성 연기자를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충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되지 않은 폭력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더 곤란한 것은 이런 식의 대상화와 무시에 기반한 기만적인 모의가 남성 스타프들 사이에 이뤄지면서도, 동시에 그런 폭력에도 ‘쿨’하게 반응하기를 ‘프로페셔널리즘’의 이름으로 여성 배우에게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물론 “큰 돈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망쳐먹는 쌍년”이 된다.

여기에서 ‘큰 돈 들어가는’이라는 부분 역시 다양한 폭력의 조건이 된다. ‘작은 것’을 살피지 않는 현장 분위기와 문화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역 배우의 심리상태를 고려하는 문제라던가 동물권 문제 등은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 상황이다. 90년대 이후 한국 영화는 ‘할리우드와 같은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화를 추구해왔으나, 할리우드로부터 배우지 못한 것은 영화산업이 기반하고 있는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었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는 90년대-2000년대 한국 영화 문화의 큰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는 질적 민주화의 처절한 실패로 이어졌다. (이 질적 민주화의 관심사는 <거짓말>의 등급을 둘러싼 싸움 등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났던 것인데, 이는 결국 ‘표현의 자유’라는 의제에 국한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2. ‘예술’에 대한 낭만적 판타지,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 그리고 ‘과몰입’이라는 오해

이번 판결문에서 등장한 ‘과몰입’이라는 표현은 매우 영리한 선택임에 틀림없다.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와 ‘예술행위’에 대한 낭만적 판타지의 절묘한 절합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중적으로 설득력을 갖는다. 무엇이 예술이나, 혹은 예술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느냐 등은 매우 복잡한 논쟁이 될 터다. 여기에서는 예술행위란 ‘천상의 피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선 언급하고자 한다. 즉, 예술은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매우 속세적인 것이며, ‘과몰입’의 성격은 맥락 안에서 형성되고 결정된다.

설사 그것이 ‘과몰입’으로 인해 빚어진 참극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 배우가 상대 노동자와의 합의 없이 ‘그런 방식으로 과몰입’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용인의 문화’다. “그러해도 괜찮다”라는 신호. (기실 그런 문화가 영화계 안에서뿐만 아니라 영화계 밖에서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실’이 가능해진다.)

그런 용인의 문화는 이미 모순을 안고 있다. 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이 예상할 수 없는 행위와 동선을 짜놓고 그를 ‘진정으로’ 당황하게 만듦으로써 혹은

‘진정으로’ 수치심을 느끼거나 고통을 느끼게 함으로써 현장감을 살리려 한다는 기획은, 이미 그 기획을 준비한 자들이 그것이 폭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예술’이라는 말은 폭력을 무마할 수 있는 만능키가 된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폭력과 고통에 기생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예술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과 가치가 없다. 설사 이를 둘러싸고 ‘예술’의 범위에 대한 논쟁이 붙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과몰입’과 같은 추상적인 단어로 용인하는 것은 법의 언어여서는 안 된다는 것만은 명백하다.

영화는 상품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대 산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건은 상품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구실이 된다. “현장이 원래 그렇지”라는 오래된 주술은 일종의 가림막이거나 기만일 뿐이다. 영화가 상품이라면, 열악한 상품 생산현장에서 고통당하는 노동자에게 그 고통을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질문할 필요가 있다.

3. 남성화된 영화제도 카르텔의 문제

물론 영화는 확실히 ‘상품’으로만 규정될 수 없는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우리는 영화, 그리고 영화 생산에 투여되는 노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예민하게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때때로 작품의 폭력성과 현장에서의 폭력은 예술이라는 말을 폭력성의 근거로 삼는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폭력에 대한 재현은 폭력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미카엘 하네케의 말을 떠올린다. (<퍼니게임>에서의 성폭력 장면 재현과 관련하여.) 폭력의 재현은 폭력을 매혹적인 스펙타클로 만들어냄으로써 매우 빈번하게 폭력성 그 자체를 내면화하여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소위 ‘작가 영화’라고 불리는 많은 영화가 사회의 폭력을 비판적으로 재현하면서도 스스로 폭력이 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이런 탓이다. 폭력을 재현하는 자도, 그 폭력을 바라보는 자도, 결과적으로 그 폭력 자체에 매혹되는 것이다. 하지만 폭력에 대한 비판이 꼭 폭력의 직접적인 재현을 경유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작품A를 예로 들어본다면, 강간을 그토록 직접적으로 시각화하는 것만이 여주인공이 내몰려 있는 심리적 절박함을 설득해내는 유일한 방식은 아니었을 것이다.

폭력의 피해를 연기하는 배우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지 않고도 얼마든지 폭력과 고통에 대해서 재현할 수 있다. 폭력을 낱것의 형태 그대로, 직접적으로 재현해버린다면 그것은 사전적인 정의상 그대로 포르노그래피일 뿐이다. (그리고 포르노 역시, 배우와의 명백한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강간이며 성폭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합의에 바탕 한 ‘성-폭력’의 재현에 대해서도 우리는 진지하게 사유해야 한다. 때때로 그것은 작품의 내적인 필요가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성적으로 상

품화하고 물신화함으로써 관객에게 어필하려는, 외적인 필요 때문에 존재한다. 한 작품이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식이 합의 없이 배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이라면, 그것은 배우에 대한 착취일 뿐이며, 동시에 제작진의 일천의 상상력과 게으름을 스스로 폭로하는 일에 불과하다.

예술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남성화된 것'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영화예술이 지독하게 '남성예술'이라는 것은 굳이 이 자리에서 다시 지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여기에 놓여있다. 특히 영화학교-영화제-영화비평-영화산업-영화정책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남성화된 영화제도 카르텔은 이 문제의 핵심이다. 영화판에서의 질적 민주화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합의 없는 연기는 연기가 아닌 폭력이다

이예지 (씨네21 기자)

지난해, <파리에서의 마지막 탕고>(1972)에서 강간 신이 상대배우 마리아 슈나이더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는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인터뷰가 전세계의 공분을 샀다. 인터뷰에서 베르톨루치 감독은 "나는 마리아 슈나이더가 수치심과 분노를 연기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여자로서 정말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기를 원했다."라고 말했다. 쏟아지는 비난에 베르톨루치 감독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버터를 윤활제로 사용하자는 아이디어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설령 합의하지 않은 것이 소품 사용 여부였을지라도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연기로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면 그것 역시 성폭행이다. 마리아 슈나이더는 생전에 가진 인터뷰에서 "촬영 당시 수치심을 느꼈으며 말론 브랜도와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 모두에게 강간당하는 기분이었다"고 밝혔던 바 있다.

감독이 남성배우에게만 따로 디렉션을 줘서 여성배우는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습적인 연기를 한다거나, 여성배우에게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노출을 유도하며 압박해오는 일은 한국영화계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얘기다. 전자의 사례로는 <한여름의 판타지아>의 장건재 감독이 이와세 료 배우에게 기습 키스를 하라고 따로 디렉션을 줬고, 김새벽 배우는 해당 사실을 모른 채 신을 촬영했던 일이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일이 있었다. 모 작품에서는 한 스텝이 남성배우에게 신이 밋밋하니 계획에 없던 액팅을 확 해버리라고 했지만 남성배우가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그만큼 즉흥적인 연기가 관행적으로 생각된다는 뜻이다.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조위원장이 씨네21 1088호의 열 번째 영화계 내 성폭력 대담에서 말한 사례에 의하면, 간단한 입맞춤 정도의 연기를 합의했는데 막상 숯이 들어가니 남자배우가 상대 여성배우에게 딥키스를 해 하얗게 질렸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감독은 오히려 당황한 여성배우를 다그치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였고, 결국 이 신인배우였던 이 배우는 현장에 적응을 못하고 연기 못하는 배우로 낙인이 찍혔다.

합의되지 않은 노출을 현장에서 유도하며 압박해오는 일 또한 많다. 씨네21 1079호의 첫 번째 대담에 참여했던 배우 이영진은 "한 영화에서 사전에 얘기되지 않았던 목욕탕 신이 새로 생겼고, 그때 감독님이 현장의 모든 스텝들 앞에서 "모델 출신이니까 노출 부담 없을 것 같은데 가슴을 보여주는 게 어떠냐고 했다"고 했다고 한다. "스텝들은 나만 보면서 기다리고 있고, 압박감이 엄청났지만 끝내 거절했다. 그 후로 현장 분위기가 수습이 안 되더라"던 이야기다. 이런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 노출, 혹은 스킨십 연기에 있어서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사항을 감독이 현장에서 밀어붙일

때, 혹은 그 밀어붙이는 과정조차 없이 기습적인 연기를 행할 때, 배우가 그 상황을 거부하기란 무척 어렵다는 것이다. “너 때문에 이 많은 스탭들이 아무 것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 내지는 “너 때문에 이 영화 전체를 망쳐야겠냐”는 식의 압박의 무게감은 상당하다. 그런데 법원은 이러한 현장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배우 곽현화가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반신 노출신이 포함된 버전을 무삭제 버전이라며 IPTV로 유료 판매한 <전망 좋은 집>(2012)의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 있어서도 무죄판결을 내렸다. 당초 곽현화는 노출수위를 합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고, 합의를 통해 상반신 노출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감독은 현장에서 “상반신 노출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다”고 곽현화를 설득했고, “편집본을 보고 빼달라면 빼주겠다”고 구두 약속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한다. 이후 곽현화는 노출 장면 공개를 거부했고 감독은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영화를 개봉했다. 그러나 이수성 감독은 이후 삭제했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이라는 명목으로 IPTV,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유료 배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 배우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인데, “실제로 감독은 이를 요구했고 배우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고. 감독이 배우에게 갑작스럽게 노출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가 과연 어려웠을까? 앞서 말한 대로 업계 내에서 이런 사건은 비일비재한 일이다. 그리고 배우가 현장에서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는 것을 과연 배우의 전적인 동의의사로 볼 수 있을까? 감독이 현장에서 하는 요구에 배우들이 받는 중압감은 엄청나다. 심지어 곽현화 배우는 편집본을 보고 빼달라면 빼주겠다는 감독과의 구두약속도 한 상태였다.

이번 포럼의 케이스도 마찬가지다. 현장에서 감독은 콘티와 합의 내용과는 다른 연기를 남성 배우에게 지시했고, 여성 배우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연기에 임했으며, 결과적으로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수위의 연기가 행해졌다. 그런데, 법원은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무죄로 판결했다. 배우는 감독의 디렉션을 받아서 연기에 과하게 몰입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배우의 동의를 얻지 않은 연기를 연기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보자. 살인자 연기를 하는 배우가 연기를 하다가 실제 살인을 한다면, 그것은 단지 연기일 뿐일까? 영화는 감독과 배우의 합의와 통제 하에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관객이 보고자 하는 것은 스토리필름이 아닌 영화고, 상대배우의 동의 없이 행한 연기는 연기가 아닌 폭력일 뿐이다. 감독과 배우 사이, 배우와 배우 사이 합의를 통해 이것이 ‘연기’임을 전제하고 촬영에 임하는 것은 영화라는 매체의 원칙이며, 허구의 세계에서 가장 엄밀히 지켜져야 할

윤리인 셈인 것이다. 이것이 연기라는 특정 업무의 차원으로 해석되고 용인된다면, 영화는 더 이상 영화가 아니게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이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라는 말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영화라는 업무의 특수성에 대해 법원은 완전히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당연한 원칙과 카메라의 윤리를 잊고 있는 감독들과 영화인들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열한 사례들에서 그들은 배우에게 어떤 연기가 있을 것임을 사전에 주지해주지 않음으로서 캐릭터가 아닌 배우 그 자체로서의 반응과 당황스러움, 수치심 등을 이끌어내는 것을 미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것이 더 좋은 연기인 것처럼, 그런 걸 이끌어내는 것도 감독의 능력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배우와의 합의와 구체적인 디렉션을 통해 연기를 이끌어야 하는 감독의 무능력을 입증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아가 이것은 허구라는 합의 하에 쌓아올려진 극영화라는 매체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합의되지 않은 노출을 현장에서 유도해, 사전 합의가 어려운 신을 용이하게 찍으려는 ‘꼼수’는 더 죄질이 나쁘다. 여성 배우의 몸을 가슴, 하반신 등 낱낱의 단위로 분절해 철저히 대상화해 소비하는 카메라와 이를 더 용이하게 착취하기 위한 전략들, 그 속에서 여성 배우의 의지는 과연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까? 영화를 만드는 감독 뿐 아니라, 영화를 소비하는 방식으로도 이런 대상화는 이루어진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한 <한공주>의 몇몇 신들은 소위 ‘엑기스’ 장면이라며 떠돌았고, 최근 올레티비에서 ‘성폭행 영화’라는 자동검색어에 위안부 사건을 다룬 영화 <귀향>이 검색돼 논란이 된 적도 있었다. 콘텐츠의 어떤 소비자들 또한 대상화와 넓은 의미의 성폭력에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베드신 촬영 사례는 모범적인 선례로 남을 것이다. 박찬욱 감독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스토리 보드를 최대한 자세히 그렸고, 배우들과 해당 신을 구체적으로 합의하며 이런 앵글은 싫다는 등의 배우들의 피드백을 반영했다. 모든 남성스텝들을 나가있게 하고 리모트컨트롤 카메라로 세트 내 배우 단 둘만이 있게 했고,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얼굴에 초점을 맞춰 감정 교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심지어 그는 카메라에 잡히지도 않는 향초를 피우고 잔잔한 음악도 틀었다. 능력 있는 감독의 디렉팅이란 이런 것이다. 합의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배우를 깜짝 놀라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좋은 연출이 될 수 없고,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연기를 하는 것은 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 <아가씨>의 베드신을 촬영한 방식이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 당연한 것이 되어야만, 우리는 영화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계 내의 성폭력은 비단 여성 배우들에게만 한정된 일이 아니다. 트위터 내 ‘영화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생성을 시작으로 수많은 고발들이 이어졌다. 여성 배우들 뿐 아니라 수많은 여성 스텝들, 여성 영화인들이 성폭행과 성희롱, 성차별과 여성 혐오에 노출되어있다는 사실을 영화계는 인지하고 있고, 변화는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작가

이자 스크립터였던 남순아 감독의 제안으로 <건기왕>에서 처음으로 범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됐고, 여성영화인모임은 영화계 내 성폭력을 전담하는 기구를 올해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한국영화감독조합에서는 조합 내 특별 기구를 만들고 성폭력 가해사실이 확정된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씨네21 1088호 대담에서 안병호 위원장이 한 말은 의미심장하다. “오랜 영화의 역사를 돌아보면, 지난 100년간 영화만 생각했고 5년 동안 노동을 생각했고, 이제 막 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는 성을 대하는 카메라의 윤리를, 동시에 프레임 밖에서의 성폭력과 성차별, 여성혐오를 이야기할 때다.

토론자 발언 및 질의응답 녹취록

● 2부 : 토론자 발언

김꽃비 || 영화배우, '찍는 페미' 개설자

안병호 || 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

이언희 || 영화감독 <미씽: 사라진 여자>

윤태진 - 현장에 계신 세 분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배우, 감독, 노조위원장 세 분이 나와 계신데 우선 배우 김꽃비씨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배우 김꽃비 씨는 페이스북에 '찍는 페미'라는 것을 개설해서 페미니스트 영화인을 모으는 역할을 하셨고 <씨네21> 좌담에 나와서 많은 얘기를 해주기도 하셨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들은 것, 느낀 것들, 그것보다 좀 더 크게 구조적인 문제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김꽃비 - 앞서 발표해주신 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다. 현장에 있는 여성인 배우로서 증언하듯이 말씀드려보겠다. 이 사건에서 보시면 해당 영화의 수위에 대한 인지가 서로 달랐다. 투자자의 경우는 19세 이상 관람가 수준으로 촬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들었고, 총괄 피디와 감독은 주연 배우 캐스팅 문제를 고려해 15세 이상 관람가로 수위를 조정, 피해자는 베드신 없는 15세 관람가로 알고 있었고, 스태프들도 일부는 15세, 일부는 19세 관람가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모른다고 주장한다고.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이걸 명백한 기만이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항상 이런 일은 여성배우를 향해서만 일어난다. 남성 영화인들의 공고한 카르텔. 자신들끼리 카르텔을 유지시키고 여성배우들을 대상화하고 도구화하는 것. 페미니즘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인지하게 되었다.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를 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었다. 나도 잘 몰랐다. 당연한 걸로 알았다. 만약 이런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옛날의 나였다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다. 하지만 이제 뭐가 문제인 지 안다. 내가 최근에 '찍는 페미'를 만들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 이 영화가 그냥 드라마라고 해놓고 알고 보니까 그 영화는 애초부터, 피디나 감독 헤드스텝들 사이에선 IPTV에서 유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좀 더 포르노그래피적인 소비를 의도해서 만들어질 것으로 애초에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다.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총괄피디나 감독이 "주연배우 캐스팅 문제를 고려하여"라고 말했다는 건 노출이 있거나 베드신이 있단 걸 배우에게 속이겠다는 너무나 명백한, 고의적인 의도다. 알렸을 때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하겠다.

윤태진 - 이언희 감독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듣고 싶은 얘기가 많다. 우리가 다루는 사건도 영화하는 분들과 얘기하면 나오는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가 '배우가 아니라 감독이 문제였던 거 아니냐'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영화현장에서 합의되지 않은 연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독님 생각과 현실은 어떤지 두루 들어보고 싶다.

이연희 나도 이 얘기를 처음에 기사를 접하고 있고 있다가 간담회 소식을 들으며 고소를 했다는 얘길 듣고 반가웠다. 이 문제를 공공연하게 나서준다는 게 반갑고 얼마나 어렵게 용기를 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했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고소를 한 대상이 남자배우라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나는 당연히 감독이라고 생각했다. 왜 남자배우였는지 묻고 싶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꼬리자르기라고 했는데, 제작자와 감독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된다.

판결문을 자세히 못 봐서 짐작해볼 때, 어떤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분들이 영화계 상황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분들인가 싶다. 특수성을 조금이라도 아시는가 싶다. 이걸 영화계의 특수성이라 말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다. 어떤 분야는 다른 나름의 사정이 있고 그 특수성을 파악해야 하는 건데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분들이 많이 게으르신 것 같다. 감독과 제작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감독 입장에서는 나름의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제작자와 투자자까지. 이 영화는 메이저 투자사에서 진행된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법정에 증거로 내놓을 수 있는 단서가 안 되었을까가 진짜 궁금했다.

오늘 얘기들이 진행되면서 과연 합의되지 않은 지시를 감독이 내린 것에 대해 얘기하는데 나는 사실 아까 발제하신 내용 중에 현장에서 감독이 노출을 갑자기 부탁하는 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한다. 내가 예전에 두 번째 영화를 찍었을 때 노출이 필요한 영화였는데 정말 힘들었다. 시나리오를 쓰면서 어디까지 수위 조절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일부러 좋은 모델에 자리를 잡아서 연출부들과 함께 우리가 액팅을 연구하면서 콘티를 짰다. 필요한 경우엔 배우에게 시연까지 해주면서 연출부에게 미안하지만 ‘이 정도의 수위가 필요한데 영화에 필요한지’ 합의해야 하는 게 너무 당연했다. 당시 현장에서 그런 경험이 있다. 한 배우가 얘기가 잘 됐고 납득이 됐고 그 정도까진 해주겠다고 했는데 촬영을 기다리고 있는데 배우가 준비하고 나오면서 ‘아 엄마가 보고싶다’ 이러는 거다. 내가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거다. 사람한테 요구는 하지만 저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걸 요구하면서 대체 내가 뭘 보여주고 싶은 거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배우들이 흔쾌히 노출해주셨는데 편집에서 잘랐다. 그 정도 노출이 과연 이 영화에 필요한가하는 생각을 했었고 나름대로는 투자사나 제작사와 그런 프레셔가 없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편집에 대해 결정할 수 있었지만. 그 영화가 흥행이 안 됐는데 ‘과연 그 장면이 흥행에 도움이 되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 그 장면을 넣었다면 이후로 아마 그 배우를 얘기할 때마다 그 사진과 동영상이 연상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면... 나는 그래서 감독께 묻고 싶다. 특히 감독님께서 이 장면을 지시할 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어떤 목적으로 이런 지시했을까. 양심의 문제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도 영화현장에서는 일개 노동자고 배우도 그렇지만 전작의 흥행, 결국 돈의 문제인데 ‘내 판단이 너희들을 손해 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권력을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하는 건 크게 차이가 난다. 특히나 영화 현장은 프리랜서 중심이기 때문에 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내가 스스로 금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산업적으로 큰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배우 A의 입장도 이해는 된다. 그런 지시를 받았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다음 영화에 선택받을 수 있다는 의지나 그런 선택 하에서 과연 이게 남배우 A만의 문제인가. 남배우 A가 분노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 분도 이런 제도 하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불법적인 일이고 법적으로 사후에 뭔가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있어야 얘기가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못된 일이라고 해도 결국엔 나도 '니가 여배우를 벗기면 앞으로 30년간 영화를 하게 해줄게'하면 고민하게 될 거 같다. 너무나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절실한 문제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다. 변호사에게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묻고 싶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렸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정말 용기 있는 여배우가 시작했는데 얘기를 더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실망스러운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가 하는 걸 더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김꽃비 _ 감독님 말씀을 들으며 내 생각을 첨언하고 싶다. 나는 굉장히 동의한다. 감독과 제작자에는 왜 책임을 묻지 않는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기만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감독이 공범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이다. 방금 이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 배우에게는 감독의 디렉팅이 있어서 그걸 따랐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란 말이 있었다. 분명히 이 남자 배우 본인이 선택했고, 성인인데 이것이 잘못된 거고 어쨌든 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맞다. 거기에 감독과 제작자의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것이고.

윤태진 _ 이언희 감독이 제일 현실의 얘기를 많이 해줬다. 그렇다고 남배우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 않나. (웃음)

이언희 _ 절대 아니다. (웃음) 요즘 뉴스를 열심히 보면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부역자란 말이지 않나. 디렉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확실히 처벌을 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살 수 있을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명한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윤태진 _ 비서실장이 시켜서 했다, 장관이 시켜서 했다고 해서 범망을 피해갈 수는 없지 않듯이 말이다. 안병호 위원장 얘기를 들을 시간이다. 영화산업노조에는 신문고가 있다고 알고 있다. <씨네21> 좌담을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언급을 한다. 노조가 촬영팀, 남성스텝 위주라, 마음 편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아쉬운 점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 노조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대응책, 개선 방안을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안병호 _ 먼저 영화 얘기하면 '예술이니까 어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영화는 예술 아니다. 예술을 폄훼하는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영화는 노동이고 일자리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내일이고 모레고 계속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대부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작자 대표, 제작사는 어디로 갔는지 항상 사라진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지점에서 돌이켜보면 예전 통계이긴 한데 2013년 보조 출연 자매 성폭력 사건이 큰 이슈가 되어서 영화진흥위원회가 간단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현장 설문 대상으로 한 여성들 중 성범죄 피해여성이 25%고 그 건으로 신고해봤다는 분이 거의 반수 이하다. 반 이상이 신고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처벌로 이어진 건 단 한 건이다. 그만큼 영화계

에서 어떤 식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제작사를 비롯해 결국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크다. ‘몇 억 들었으니까 어떻게든 끝내야 너도 좋고 나도 좋다’는 식이다. 또 다른 제작사가 등장해 작품을 만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결국 그 나쁜 놈만 성추행하는, 개인적으로 인격이 심각하게 안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결국 시스템의 문제라는 건, 책임을 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있지 않다는 점에서다. 제작사는 감독이든 다른 스태프이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아예 부재했다는 게 오늘 건과 여러 얘기들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다. 제작사를 비롯한 이들이 성폭력 교사 혹은 성폭력 방조에 대한 혐의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극명하게 든다.

연기 관련해서 예전부터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한국영화 현장들을 보면 감독의 연출력이라는 것, ‘디렉션’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하는 거다. 많은 현장에서 감독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뭔가가 벌어질 거야’ 하는 식으로 얘기한다. 디렉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미루어 짐작건대 감독이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써 배우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냐고 했을 때, 현재까지 다수의 작품에 참여하면서 그렇다고 할 만한 게 정말 손에 꼽힌다. 해외 영화제에서 이름 알려진 봉준호, 박찬욱 외의 현장에서 과연 우리가 디렉션이란 걸 볼 수 있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감독은 한 테이크가 촬영이 되고 다른 테이크가 촬영될 때 “좋은 데 한 번 더 가자”고 얘기한다. 배우에게 어떤 연기를 해달라는 충분한 합의가 없다. 어떤 식의 소통도 명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디렉션이 없는 현장에서 감독이 얼마나 연출력을 발휘하고 있었는가. 먼저 시나리오만 쓰고, 나중에 현장에선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의미다. 현장에서 당하게 되는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노출장면이나 정사 장면이 있는 날은 스태프들 모두 긴장해있는 상태다. 모두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 그런 와중에 감독은 촬영시작되기 전 배우를 불러낸다. 소통하려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려고 접근한다는 의미다. 말이 좋아 설득이지 강요다. 배우가 와서 찍으면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배우가 안 한다고 할 수 있겠나. 대개 영화들이 상대 배우에게 당일 날까지 쉬쉬한다. 찍지 않고는 못 배긴다는 전제가 성립된다. 정사 장면이 촬영되는 현장에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감독과 주요 배우, 여자 스태프 소수만 있는 상태로 현장이 진행된다. 감독과 얘기하기 위해 오랫동안 시간을 끌거나 하면, 예민하게만 굴고 연기도 못하는 배우라는 인식이 생긴다. 키스신도 마찬가지다. 사례마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씩 굳이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 불과 20년, 30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한 치의 변화도 없이 같은 패턴으로 일어나는 게 한심스럽다. 결국 배우들이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는지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통용되는 주조연 배우들의 계약서를 보는데 굉장히 전근대적인 계약이다. 금액 같은 건 차치하고 계약이 담고 있는 내용만 살펴보면 “본 계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종료 된다”고 되어 있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해서 본 영화에 필요한 음의 영역, 여기서 음은 배우다. 배우가 뭔가를 다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예전에 있던 스태프 계약서와 똑같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근로계약서에 있던 일. 최근 통용되는 배우 계약서에 존재한다. 비단 우리가 아는 탭배우도 다르지 않다. 다만 탭배우는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입심이 다른 배우와는 다르다. 만약 여기 거론되는 배우가 이니셜만 대도 아는 배우라면 결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배우들도 계급화되어 있다. 연기로 헌신하려는 사람들은 계속 배제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 거다. 촬영과 관련된 한 문장

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갑과 을은 을이 신체, 명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장면
에 대하여 대역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을과 충분히 협의하기로 한다.

배우와 관련된 법안이 없을까 해서 찾아보니 딱 두 가지가 있다. 깊게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대중문화산업발전법, 예술인 복지법이 그것이다. 명확하게 배우를 보호하거나 기능한다기보다
배우, 스태프를 아우르는 것이다. 대중문화산업발전법은 처음에 고 장자연님과 관련해 매니지먼트
문제로 촉발된 것이다. 우리나라 법이 문제에 한해서만 고민하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배우를 다루고 있지만 대중문화산업발전법에선 계약할 때 기간 명시하고, 무슨 일 할
건지 쓰고, 언제 끝날지 써야 하고, 안 쓰면 500만원 과태료를 문다는 정도다. 어떤 장면에서
배우가 인격적으로 침해 받거나, 피해 받는 부분에 대해선 한 줄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른 지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근로표준계약서라고 해서 노조와 스태프이 했던 계약서와 시
나리오 표준계약서 등 문체부와 공고하고 알리는 계약서가 몇 종 있다. 방송도 가수, 배우 출
연 표준 계약서 등 통용되는 계약서가 있다. 거기서도 미미하긴 하지만 출연 시 침해당할 수
있는 인권에 관한 조치가 있는데 영화와 관련해 배우와 관련된 부분은 전무하다. 배우를 바라
볼 때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는 것 같다. 하나가 굉장히 먼 존재로 생각하는 거다. 언론에서
그렇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 내가 현장에서 보는 배우는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 언론에서 통용
되어서 일반 관객들이 인식하는 배우는 연예가중계 같은 곳에서 가십이나 사생활을 알려주고
SNS로 볼 수 있는 존재 정도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배우들도 나랑 같은 시간에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덜
어버린 것 중에 '어떤 배우가 몇 억을 받았니' 하는 개런티 문제인데, 거기엔 또 매니지먼트가
끼어 있다. 주연배우 계약서를 보면 대부분 3자 계약을 하게 된다. 갑은 제작사, 을이 매니지
먼트, 병이 배우인 개인이 되는 거다. 해외 어디에도 3자 계약으로 묶여져서 하는 건 잘 없
다. 매니지먼트 회사가 끼게 된 건 배우들의 페이가 억단위를 넘어가면서 세금 문제를 처리하
기 위해 그런 걸 수 있다. 조단역 배우들도 매니지먼트를 끼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떤 경
우에 따라서는 배우가 본연의 권리를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신문고 얘기로 돌아가면 신문고 뿐 아니라 영화 노조 구조가 성이 고르게 조직되지 못한 한계
가 있다. 스태프로 일하는 다수가 남성이다. 촬영으로 구성된 조합만 보면 200명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여성 스태프는 10명도 안 된다. 촬영 일을 구하는 네이버 밴드에 등록된
사람이 900명 정도인데 그 중 여성이라고 추정되는 인원도 20명이 채 안 된다. 진입 자체가
닫혀 있는 구조다. 신문고에서도 신고를 받고 넓혀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근에 현장에서 여성
조감독님의 전화가 온 적이 있다. 그냥 울면서 시작한다. 여성 노무사 분이랑 한 시간 가량
얘기하다가 끝나는 거다.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라도 존재할 수 있는 것. 피해를 알리고
들어주는 사람의 존재가 중요하다. 최근에도 전화가 온다. 우리가 종종 연결해주는 정신과 전
문의가 있는데 그 분과 몇 시간 동안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문고
의 자랑할 만한 기능 중 하나가 체불이 있는 영화사에 대해선 영진위 지원작에서 배제되고,
극장 상영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체불액만 1억이 넘었던 영화가 있다. 그 영화가 잠잠하
다가 개봉한다는 소식을 듣고 배급사에 연락해서 개봉을 막아야 한다고 해서 개봉을 못한 경
우가 있다. 어찌됐든 가해자가 처벌되어야 한다. 예술에 국한된 소리 그만하셨으면 한다.

● 질의응답 및 토론자 추가 발언 등

윤태진 질문도 있을 거다.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질문해도 좋고 두루뭉실한 질문이라도 좋다.

참석자 미디어오늘의 정은영기자다. 안병호 위원장에게. 노조 설문조사에서 신고했지만 처벌이 이뤄진 사례가 한 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고 싶다.

안병호 설문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당시 보조출연 자매 사건이 문제가 되자 2013년 3, 4월 영진위에서 보조 출연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던 거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영진위가 밝히지 않고 있어서 그 정도 수준만 알고 있다. 당시는 보조 출연 팀장이 명백하게 성폭력을 가해한 사건이다. 보조출연 자매 사건은 시효가 끝나는 바람에 책임자를 명확하게 처벌할 수 없어서 최민희 의원실을 통해 재수사하자고 하고, 어머니를 상대로 정신과 자문의를 계속 요청했었는데 결국 수사는 안 됐다. 어쨌든 객관적인 상황은 전달받지 않았다.

윤태진 발표 중에도 나왔지만 최근 사건이 하나 더 있었다.곽현화 배우 사건이다. 감독 배우 사이 권력관계에 대해 재판정이 무시했던 판결이라 생각한다. 이 자리에 곽현화 배우가 나와 계시다.

곽현화 곽현화라고 한다. 소송한지가 2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혐의없음으로 나왔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아까 기자님이 쪽 과정을 설명해주셨는데 구두계약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법적으로 들이밀 수 없을 것 같아서 감독과의 녹취, 스태프와의 녹취도 제시하고 그리고 내 일관된 입장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처음에 혐의없음으로 나와서 굉장히 놀랐다. 혐의없음으로 나왔을 때 검사의 입장은 감독의 편집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한 번 더 시도하니까 다른 검사가 배정됐는데 혐의있음으로 돼서 기소가 됐다. 재판을 했는데 이번엔 감독이 무죄가 나왔다. 판결문을 읽고 많이 놀랐다. '그렇게 중요한데 왜 합의를 해줬나. 곽현화의 판단이 이례적이다'는 거다.

촬영환경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많다. 나 같은 상황은 감독이 세련된 방식으로 설득한 사례였다. 처음 시나리오 받았을 때는 상반신 노출이 있어서 빼고 하겠다고 얘기하고 들어갔고, 계약서엔 합의 하에 찍는다는 멘트를 적고 들어갔다. 합의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안 하면 된다 싶어서 그 정도만으로도 법정 장치가 효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촬영에 들어갔다. 노출장면을 찍기 며칠 전부터 감독이 나를 불러서 설득하더라. 이 장면이 필요한 장면이라고. 나는 그동안 코미디언 방송인으로 지내다가 배우로서 첫 작품이고 굉장히 진지했다. 시나리오 상에 노출장면이 있고 저예산영화긴 하지만 나는 감독이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나 생각했다. 감독은 배우로서 자리매김하고 싶지 않냐며 이 장면이 꼭 필요한 장면이고 내가 꼭 그 장면을 찍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도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그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간 것이지 않나. 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감독이 재차 하는 말이 '이 많은 스태프들, 배우들 다시 한 번 움직이기 힘든 거 아느냐, 일단 찍어놓고 나중에 편집본을 보고 이 장면이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빼주겠다'는 거다. 지금 되어서는 정말 후회되고 왜 그랬나 싶지만 그렇다고 내 탓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정말 연기라고 생각하고 배우로서 최선을 다해

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허락한 거다.

그렇게 하고 편집본을 보니까, 죄송하지만 그 장면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다. 감독님께 이걸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잖나. 순화된 표현으로 영화가 괜찮은데 이 장면은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빼 달라 얘기했는데 감독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빼준다는 게 아니고 설득을 하는 거다. 그 때 왜 설득을 하지 싶어 겁이 났다. 내가 울먹이면서 전화상으로 얘기했다. 설득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빼줘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뻘 상태로 극장에 상영이 됐고 곧 IPTV로 넘어가서 수익을 많이 올리더라. 내가 시나리오 선택하는 눈이 부족했고 다음 영화는 잘 선택 해야겠다 생각했다. 두 번째 영화를 찍었다. 봉만대 감독의 <아티스트 봉만대>라고. 시나리오 상에서 노출신이 한 장면이 있었다.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감독님과 충분히 대화를 했다. 노출신을 못하겠다니 CG로 하시겠다고 하더라. 감독님과 충분한 대화와 합의, 극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그래서 배우로서 연기했다고 생각하고 그 작품에 대해 후회가 없다. 두 번째 영화를 찍고 나서 얼마 이후에, 그러니까 <전망 좋은 집>을 찍고선 몇 년이 지났다. 그런데 갑자기 무삭제판, 감독판 이라는 이름으로 그 장면이 들어가 있는 버전이 나오고 있던 걸 지인을 통해 알았다. 너무 놀라서 바들바들 떨면서 영화를 다운 받아서 봤는데 미칠 거 같은 거다. 전화를 했더니 감독이 전화를 안 받는 거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전화가 연결이 되어서 증거라도 없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싶어 녹취를 했다. 감독님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라. 나는 사과받고 얘기하겠다고 하니 그러더라. 동의 없이 내보냈다. 제작사가 시켰다. 현화씨한테 물어봤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며. 감독님한테 매달리면서 까지 얘기한 부분인데 어떻게 동의 없이 내보낼 수 있냐고 하니 미안하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이 녹취록과 스탭 두 분의 녹취를 가지고 소송을 했다. 나는 이 정도면 내 입장이 충분히 대변될 줄 알았는데 판사와 검사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첫 번째, 합의된 사항이면 왜 울면서 매달리고 빼달라 했냐는 거다. 이건 순순히 광현화가 찍은 건데 울면서 떼쳐서 억지로 빼달라고 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나온 거다.

나도 배우고 드라마를 찍고 계약서를 쓸 때도 있는데 2차 판권에 대한 이해 없이 계약서를 쓴 적이 한 번도 없고 계약서를 한 번 더 읽어본다. 나는 감독의 편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 분명히 감독과 합의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하는 건데 감독과 배우 간에 어떤 갑을 관계에 위치해 있는지 인식이 없는 상태로 판사는 그대로 판단을 하더라. 그래서 판결문에 “이례적이다”라며 무죄가 나왔더라. 녹취에서 감독이 “미안하다, 동의 없이 넣었다”는 감독의 말은 넘기고 내가 생떼 써서 빼달라는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화가 났다. 이 사건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느꼈다. 나는 얼굴이 알려지고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다. 주변엔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은데 댓글 중엔 그런 내용이 있었다. “예전에 네가 섹시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화보도 찍은 적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여기 한 장면 추가 됐다고 뭐가 억울하다고 그러냐.”

대질심문할 때 정말 화가 났던 적이 있었다. 감독이 그러더라. <아티스트 봉만대>에선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왜 본인 영화는 안 되냐는 거다. 나는 시나리오를 보고 임하는 거지. 그럼

한번 노출신을 찍은 여자배우는 다른 영화에서는 어느 장면이든 갖다 써도 상관 없다는 건가. 내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배우인가. 돈 벌려고 쓰여진 배우인가. 너무 황당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했었다. 이 사태를 통해 그 감독 측에서 기자회견 하고 공식 입장 읽어보고 화가 났던 게, 나는 이 영화를 찍기 이전에 충분히 감독의 재량에 따라서 배우로서 보여줄 것이 있고, 작품이 의미가 있고 나 외에 다른 여배우도 진지한 마음으로 들어가고 감독도 이 영화가 잘 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으쌰으쌰해서 들어간 영환데 기자회견에서는 성인영화 프레임으로 걸어놨더라. 그 부분도 너무 마음이 아팠다. 아까는 예술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선 성인영화 프레임을 씌우는 거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필요한 잣대를 끌어다가 이걸 예술이고 이걸 성인영화다, 알고 했지 않느냐며 배우의 입장이란 게 없더라. 사실 이 자리에 카메라가 있고 기자도 있지만 실시간검색어에 오르내리는 거 자체가 싫다. 이게 너무 억울하지만 익명으로 사건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마음이 컸다.

여기에 나선 이유는 사실 내가 소송하는 몇 년 동안 방송을 거의 하지 않고, 사실 활발하고 당찬 이미지인데 한번 방송 출연할 때마다 옷차림을 신경 쓰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하려고 했던 말을 오히려 참게 되고, 그게 여성이라 당연시 되었던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커서 몇 년 동안 가슴앓이를 많이 했다. 생각하고 책도 많이 읽고 주변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이걸 절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다. 이제 더 용기를 내서 인터뷰 하고 내 입장 분명히 얘기하고, 혹시 나와 비슷한 억울한 상황에 있는 사람 돕고 싶다.

윤태진 - 씩씩하게 말하겠지만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나. 나도 댓글을 보면서 그게 우리나라 수준인가 생각했다. 오늘 광현화씨가 말 한 진정성이 전달되도록 이야기를 나눠보자. 의견 얘기하거나 질문 두어 분만 더 받아보겠다.

참석자 -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에서 나온 문영기자다. 배우들도 소속사가 있을 텐데 보통 영화를 찍을 때 계약서에 써 있는 항목을 사내변호사가 배우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주지 않나. 소속사가 있으면 계약서부터 검토하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안병호 - 내가 실무를 맡진 않는데 조합원 내 해당 스텝에게 확인했던 현재에서 통행되고 있는 주연배우 및 조단역 계약서를 살펴보면 어떤 계약서나 법에도 출연과 관련해 배우의 권리를 보장한다던가 하는 게 없다. 통용되는 계약서 상에 장면에 대한 합의 부분을 보면 “갑과 병은 신체 명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면에 대하여, 그리고 대역사용 여부에 대해 병과 충분히 사전 협의한다”는 내용밖에 없다. 계약서에서 다루는 주요한 내용은 출연을 전제로 한 계약이고 계약금에 대한 내용 이상도 이하도 없다. 배우 계약과 관련해 배우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표준계약서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손희정 - 영화뿐 아니라 연예산업 전반으로 확장해서 봐야할 것 같다. 연예인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가 카르텔의 중심에 있다. 소속사가 제작을 겸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다 연결돼 있다. 소속사가 얼마나 소속배우를 대변할 수 있는가는 권력의 문제. 배우가 입지를 다져서 소속사 자체를 소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안 위원장이 말씀한 것처럼 연예인 내부에서도 위계가 정해져 있고 특히 여성 배우는 어떤 위계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로 결정이 되는 부분이다. 소속사가 왜 소속 연예인을 대변하지 않느냐하는 건 한국 사회에서 적절한 진단 같지는 않다.

윤태진 _첨언하자면 우리나라가 방송 연예 쪽 계약이 무의미한 게 많다. 미국은 1950년대 파라마운트 판례라는 게 있어서 에이전시와 제작이 분리된다. 에이전시는 조금이라도 배우의 권익을 올려주는 계약을 하려고 하고 제작사는 하다못해 출연료를 깎으려고 하는데 그게 동일한 물일 수 없지 않나. 우리나라는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 보니 사실상 계약서를 배우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편이다.

정하경주 _이 사건의 경우엔 피해자가 소속사 대표한테 얘기했더니 ‘일 크게 만들지 마라, 조용히 해’라고 했고 그런 이유 중 하나는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이다. 피해자는 결국 소속사와 더욱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있었다. 피해자 얘기로는 만약 이게 베드신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면 계약서에 명시가 있을 텐데 이 영화는 15세 관람가 멜로고 베드신이 없는 영화라고 명확히 들어서 굳이 계약서에 그런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신뢰에 기반한 선택이었는데 그걸 무너뜨리는 성폭력적인 상황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꽃비 _배우의 매니지먼트나 에이전시에서 계약할 때 사내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검토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는데. 나는 그렇게 큰 회사에 있지 않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회사가 많지 않다. 에이전시가 굉장히 많고, 그만큼 작은 회사가 많다. 회사 내에 사내 변호사가 있는 회사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지 정확히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지만 나는 거의 본 적이 없다. 대부분 아까 위원장 말씀처럼 얼마를 받고 출연을 하고, 이런 수준에 그친다. 매니지먼트가 의지가 될 수 없는 건 사회적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게 엄연한 피해사실이고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니지먼트의 사장이라고 해도 과연 그런 인식이 있을 것인가. 개인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다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할 거다.

정하경주 _매니지먼트 대표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 최근 상담 들어왔던 사례 하나가 배우 지망생이 대표를 소개받고 기획사에 들어갈지 말지 캐스팅 받으러 갔는데 대표가 배우한테 남자친구나 잠자리에 대해 묻고, 모텔에 가자고 했다는 거다. 배우 지망생이 싫다고 하고 집에 가려고 하니, 그 대표가 모텔에 데리고 갔다. 근데 모텔이 만실이었던 거다. 그러고 헤어지면서 내일 가자고 말을 했다. 이 분이 주변에 이 상황을 알린 거다. 주변 지인이 이 대표한테 전화를 하니깐 대표가 하는 말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배우가 되려고 한다. 이 사람이 어떤 배우가 되려는지 어떤 자질을 갖춘 건지 테스트한 거고 통과했다는 거다.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사람조차도 이 사람을 지원해야 하겠다기보다 이 여성을 착취하고, 그것은 테스트였다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곽현화 _이 쪽에서 일한지 11년이 되었다. 이 쪽 분야에 있다면 안타까운 게 성적으로 오픈된 걸 예술적인 기행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넌 배우야. 넌 벗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거나 아니라고 하면 까탈스러운 아이,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해버린다. 영화계 뿐 아니라 문단계 성폭력도 심각한 문제다. 소위 말하는 예술계 종사하는 분들의 그런 마인드는 예술이 아니다. 통용될 수 없는 거다. 착각하지 말아 달라.

윤태진 _세 분 질문을 한꺼번에 듣고 적절한 대답 듣고 마무리하겠다.

참석자 영화계에 종사한다. 성폭력이라는 게 사실 위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지 않나. A 사건의 경우, 많은 분들이 화낼 수 있겠지만 피해자라고 알려진 분이 주연이고 피고인은 단역 배우다. 민우회분은 피해자분의 이야기만 듣고 피고인의 얘기는 듣지 않은 게 아닌가. 감독이 저지른 일인데 두 사람이 치고받고 있는 일이다.

참석자 한 가지 질문과 한 가지 감상이다. 손희정님이 말씀해주셨듯 구매행위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이걸 정말 지지한다면 나는 민우회와 씨네21과 관련 없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힘써주는 사람들을 위해 구매행위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나는 곽현화 배우님이 겪은 게 굉장히 일상적인, 여성이라면 경험해봤을 만한 보통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곽 배우 말을 듣고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해외의 사례는 없는 건지.

참석자 기독교 신문사 뉴스엔조이의 최유리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교인간의 성폭력이 빈번하다. 교회내의 성폭력과 패턴이나 대처법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피해자분들도 교회에서 사회법으로 처벌받길 원하고 실제로 하긴 한다. 재판 과정에서 판검사가 가해자 편을 드는 경우가 많다. 영화계 내 성폭력으로 인해 재판이 열렸을 때 범죄라고 입증 받은 사건이 있는지.

정하경주 (지금 처음 질문하신 분) 질문의 요지는 가해자를 만나 가해자 얘기를 들어봤냐는 거 맞나.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입장은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갖고 있는 자료를 꼼꼼히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가는 일을 하고 있다. 판결문에 드러나는 사실만을 놓고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마련한 거다. 감독에 대해서 이 부분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렸고 검사는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검사는 피고인의 위법성을 판단했을 뿐, 감독이나 제작사, 투자사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은 건 검사에게 물어야 한다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도 이런 부분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거다. 수사기관 자체도 이 사건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증명이다. 감독도 잘 못했고 피고인도 잘못했고 알고도 묵인했던 스태프들까지 전반적으로 문제라는 거지 가해자 한 사람만을 두고 물어뜯으려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니다.

윤태진 가해자의 입장은 판사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한다. 전체 그림에서 보면 사소한 가해자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가 재판정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는 그 무죄판결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 그걸 기반으로 영화계의 성폭력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문제에서 보면 가해자의 문제는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 위원장이 답변해 달라. 꼭 성폭력이 아니더라도 강자가 법의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안병호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아는 사례는 없다. 가해자들이 대부분 드러나지 않는 게 영화계 현장의 사례다. 최근 해시태그만 보더라도 문단 내 성폭력 문제와 관해서는 실명이 드러나고 있지만 영화계는 유독 그런 실명이나 구체적인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들

이켜 생각해보면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에 대한 반증일지도 모르겠다. 최근에 여성 영화인 모임에서 어떤 기구를 만든다고 했는데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독립영화협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상담 위원회도 만들었다고 한다. 그 사례를 들여다보면 내부만 그 사례를 알고 있다는 거다. 세월이 흘러서 우리도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영화를 못하게 단체에서 제명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니 또 영화를 찍고 있더라는 식의 반복이다. 처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처벌하지 못하게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가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피해자만 등장하는 꼴이 되는 거다. 가해를 한 사람은 영화에 참여할 수 없다는 분명한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앞으로의 계속된 신고도 조용한 목소리로만 묻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김꽃비 - 위계 얘기 나왔을 때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 성폭력은 권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 같다. 아까 피고인이 단역이고, 피해자가 주연이라는 점만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젠더권력이 존재한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만으로도 권력의 차가 존재하고. 피고인의 경우에는 감독이 디렉션을 줬다는 것은 없어진 권력이 있다는 것이다.

윤태진 - 사회자 입장에서 말한다면 만족스러울 만큼 이야기가 오간 건 아닌 거 같다. 감독, 제작자, 교육의 문제라는 얘기가 심도 깊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시간적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이 영화계 언저리에서 일하며 풍경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학교에 있다만은 영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 여학생 비율이 많고 그 학생들이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자기 역할을 하면 나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세월에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구조적,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 같다. 민우회는 민우회대로, <씨네21>은 <씨네21>대로 열심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공동 주최하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 인권 지원센터 공지를 하나 하겠다. 2010년에 여성 연예인들의 인권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센터다. 이번 사건 또한 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이 사건을 주목하고 함께 대응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성 연예인 인권 개선을 개선하는 활동을 더 활발히 하려고 한다. 혹시 관련된 사례를 알고 있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사례를 받고 있는 <씨네21> 혹은 여성 연예인 인권 지원센터로 연락 해달라. 긴 시간 자리해주셔서 감사하다.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상담번호 02.736.1366